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63322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나6332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386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선인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호

변론 종결 2021. 10. 27.

판결 선고 2022. 1. 19.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19가단3865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57,26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강재철

판사문현정

판사강지현